

지역혁신형(1유형)

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

「제주형 청년 R&D인력 육성사업」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 등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「제주형 청년 R&D인력 육성」 사업의 참여기업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.

2022년 2월 22일

제주테크노파크원장

1

사업개요

필요성 및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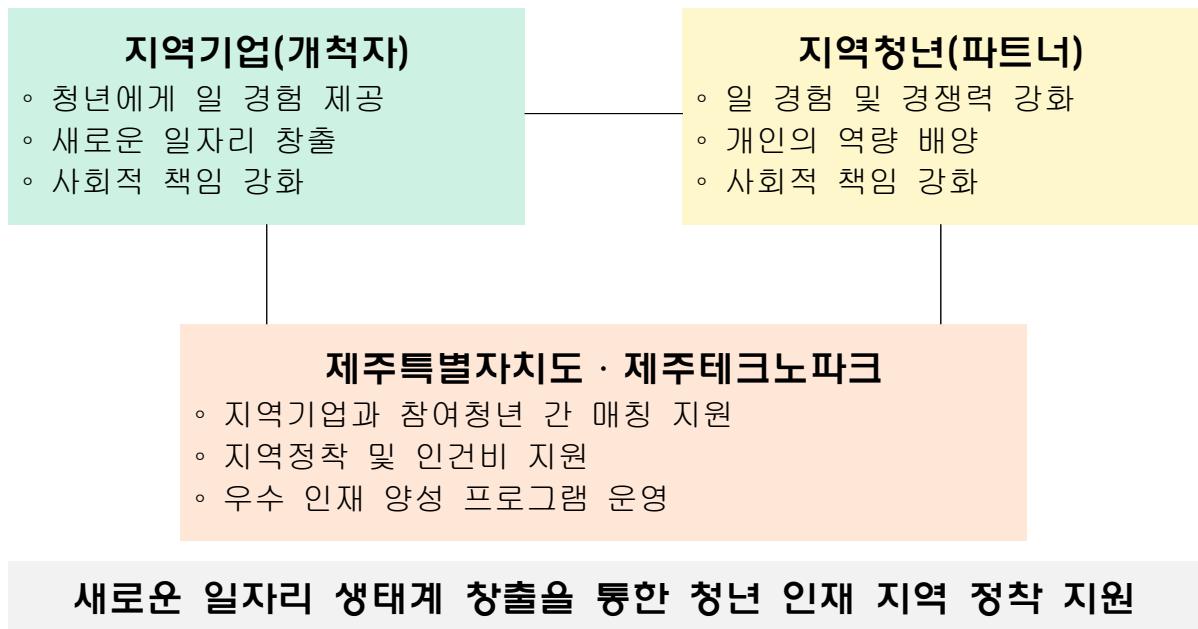
- 지역기업의 혁신적 성장에 필수적인 우수 인력 채용 수요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 인재 일자리를 창출하고,
- 제주의 주력산업 기반의 연구개발(R&D) 인력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숙련된 연구개발 인력의 지역정착 유도

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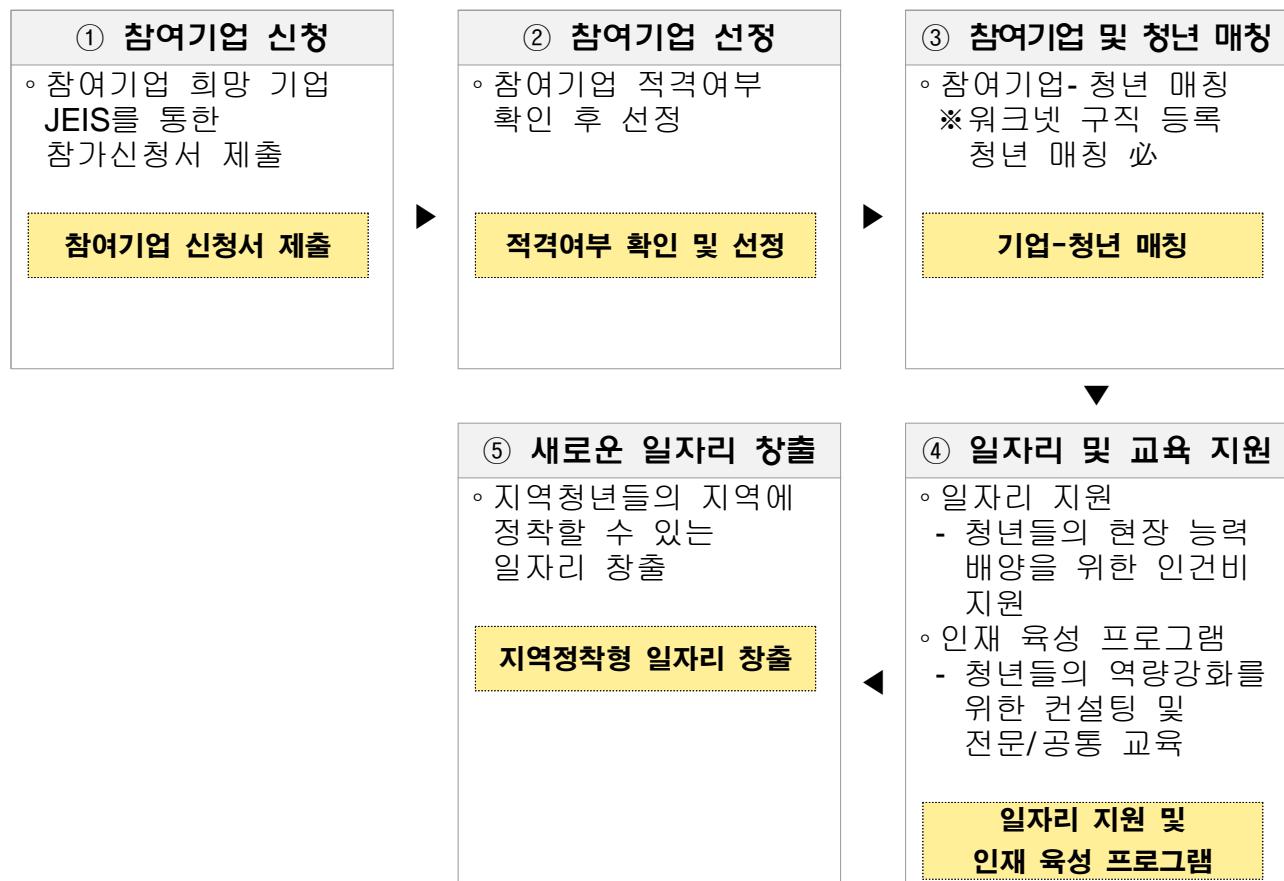
- 사업명: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
- 세부사업: 제주형 청년 R&D인력 육성사업
- 주최/주관: 제주특별자치도 / (재)제주테크노파크
- 지원대상: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기업 중 아래의 해당되는 산업 기반의 연구개발(R&D)인력 채용을 원하는 중소기업, 법인·단체(비영리법인·단체 포함)
 - 주력산업: 스마트관광, 청정바이오, 그린에너지 산업

- 접수기간: 2022. 2. 22.(화) ~ 2022. 3. 3.(목) 18:00
- 사업기간: 약정일로 부터 2년 범위 내
 - * 지원 규모와 금액은 향후 행정안전부/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 의거 하여 변경 될 수 있음
- 지원규모: 20명 내외(기업 당 상시근로자의 50% 범위 내에서 평가 후 지원)
(상시근로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외, 인원 산출시 소숫점이하 절상)
 - ※ 서류 적격 여부 확인 및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 지원여부 결정
- 지원내용
 - 직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연 2,400만원의 90% 지원
 - ※ 월 보수 : 200만원이상 (국도비 보조 180만원, 기업 자부담 20만원이상)
 - ※ 기업 부담분 4대보험은 기업부담
 - 행정시 동 지역외 읍·면 지역 기업 취업자 교통비 월 10만원 범위내 지원
 - 채용자에 대한 20시간 이상 집합교육, 6시간 이상 심화교육 및 컨설팅 지원(의무참여)
-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‘22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
(다만, ‘21년 기존유형과 ’22년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)
 - ※ 기 선정된 ‘22년 신규유형 사업이 있을 경우, 다른 유형 사업 선정에 자동제외

□ 추진체계



□ 추진전략 및 프로세스



2

신청자격 및 기준(기업)

□ 신청자격 및 기준: 아래의 각호에 모두 충족 되는 기업

-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기업 중 아래의 해당되는 중소기업, 법인·단체 (비영리법인·단체 포함)

분야	해당기업
스마트관광산업	D.N.A.(Data·Network·AI) 등 디지털 기술이 지역산업(관광·MICE·문화, 1차산업 등)에 융합되어 제품, 서비스의 혁신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
청정바이오산업	제주의 청정바이오 소재를 활용하여 건강·뷰티 제품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
그린에너지산업	지능형전력서비스, 전기차충전인프라, 풍력·태양광 MRO, ESS 연계시스템 등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(CFI 2030)에 대 응하고 에너지 수급 자족화 및 효율화를 위한 지역 대체에너 지 육성 산업

2. 청년 근로자에게 연기준 24,000천원 이상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

※ 급여 지급내역 확인 후 충족 시 지원하며, 지원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시 지원 취소

3. 참여 일자리 분야

○ 제주의 주력산업(스마트관광, 청정바이오, 그린에너지 산업) 기반의 연구개발(R&D) 일자리분야

- 가. 기초연구 :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특정 응용을 노리지 않고, 또는 특정의 사업적 목적없이 과학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
- 나. 응용연구 :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실제 응용을 직접 노리는 연구활동, 또는 제품과 공정에서 특정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행한 연구
- 다. 개발연구 :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등에 의한 기존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재료, 장치, 제품, 시스템, 공정 등의 도입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한 연구

□ 지원제외 대상

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지원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(선정 후 취소 가능)

- 가.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
- 나.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기업
 -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사업장 포함
- 다.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, 국세·지방세 체납 기업
 - 4대보험 적용제외 비영리단체·법인은 미가입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 예) 국민·건강·건강 보험 가입,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참여
 - 체납이 있더라도 국세청 ‘완납증명서’ 발급 사업장에 한하여 참여 가능
- 라. 사업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감원이 있었거나 고용유지 조치 중인 기업
- 마.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업
- 바. 정부·지방자치단체, 제주테크노파크 사업의 참여 제한 중인 기업
- 사. 신청기업이 대기업인 경우

아.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
- 1)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(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제외)
- 2) 법정관리·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(개인 회생·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, 면책권자 포함)
- 3)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

3

지원자격 및 기준(청년)

□ 지원자격 및 기준

- 연령기준: 만 18 ~ 39세(1982. 1. 1 ~ 2004. 12. 31 출생자) 청년
- 고용상태: 미취업자(실업자 + 비경제활동인구) 및 이에 준하는 자
 - 워크넷 구직신청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, 휴·폐업자(모집기간 마감일 기준 1년 이내, 증명서 제출)를 우선 선발
- 지역요건: 사업기간 동안 근무지 및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 유지
 - 다만,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전입시 참여 가능

□ 참여제한 대상

-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, 만18세 미만 또는 40세 이상자, 현재 취업상태인 자(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(단, 일용근로자 제외),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)
 - 서류 또는 실질적인 사업장 대표와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(단, 결혼이민자 제외)
 -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(휴학생 포함)
 - 단, 대학교(원) 수료생, 졸업예정자, 졸업유예자, 방송통신대학·사이버대학·야간대학(원) 재학생은 참여 가능
- ※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(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)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

상태인 자, 특성화고 3년 2학기 재학중으로 학교장의 졸업 추천을 받은자

○ 청년참여자의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에 해당되는 자

- 중복참여란 「동일한 기간」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
- 반복참여란 「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,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」

※ 직접일자리사업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 경험을 통해民間 일자리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

○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미만 참여자 제한

○ 아동·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복지법」 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

○ 신청서,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
○ 기타 지병·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
※ 유의사항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
-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□ 직접 인건비 지원

- 직접일자리 제공 기업 인건비 지원(4대 보험은 기업부담)
 - : 약정일로 부터 2년 범위 내
 - * 지원기간은 중앙정부(행정안전부)/제주특별자치도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- 지원금액 : 지원 신규 채용 시 연봉 2,400만원 기준 90%(월 1,800천원) 지원
 - * 연봉 24,000천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금은 1,800천원으로 동일
- 행정시(제주시, 서귀포시) 동 지역외 읍·면 지역 취업자인 경우 교통비 월 10만원, 동일 읍·면지역에서 출근, 제주시 동 지역에서 서귀포시 동 지역 출근 월 5만원 추가지원 가능
- 인건비 지원 형태: 기업에서 선지급 후 지급내역 확인 후 지원

□ 교육 프로그램 지원

- 사업 참여기간 중 20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및 6시간 이상의 심화교육/컨설팅 지원
 - * 참여기업 업종, 형태 등을 고려하여 향후 편성
 - * 관리기관(제주테크노파크)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무 참여 (미참여시 협약해지)

- 참여자는 워크넷(www.work.go.kr) 등록 유효 구인·구직자에 한함
-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근로계약은 사업장(기업)과 체결 원칙
- 참여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(1일 8시간, 주5일) 적용원칙
-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(참여기업 부담)
- 참여근로자의 출근부를 작성·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
- 참여기업은 근로계약시 근무지를 명시하여야 하며, 그 이외의 장소나 재택근무는 실시할 수 없음. 다만, 근무 장소 변경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(제주테크노파크)와 사전협의하여야 함

6

평가방법 및 추진절차

□ 선정 및 지원절차

신청서 제출	참여기업 선정 및 통보	기업-청년 매칭	적격여부 조회 및 통보	채용 및 협약
기업 → 제주TP	제주TP → 기업	기업 - 청년 매칭	제주TP → 기업/청년	기업 - 제주TP - 청년
• 사업 신청서 (기업용), 관련 서류 등 접수	• 제출서류 검토 • 현장 확인 (제출서류 미미 또는 사실관계 확인 필요시) • 참여기업 선정 (서면 평가)	• 기업-청년 매칭 • 사업 신청서 및 서류 제출 (청년용) • 전체 지원 규모의 100% 선착순 지원	• 사업 신청서, 제출 서류 검토 및 결과 통보	• 협약 및 지원

※ 기업 및 청년 구직자 신청 전 채용된 청년에 경우 지원 및 소급 적용 불가

※ 워크넷(www.work.go.kr) 구직 신청 청년만 참여 가능

□ 선정방법 및 항목

○ 제출서류 사전 검토

- 신청자격 부합성, 지원제외 대상 등 제출서류 검토

○ 평가방법: 서류 평가(평가위원회 구성)

-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 위촉 후 평가 진행
- 사업 평가점수는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계산하며 고득점순
-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은 고득점순으로 지원, 6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분류

○ 평가항목

평가항목 및 내용		착안사항	배점
기업비전 및 지원 인프라(30)	기업 비전	기업의 비전과 본 사업 목적과 부합정도	10
	지원 인프라	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원(인력, 시설, 장비 등)	10
	기업 활동 현황/계획	해당 기업이 지역내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진행한 활동현황/계획	10
인력활용 및 지원 계획 (50)	인력활용 계획	해당 청년이 회사내의 업무 역할 및 비중	30
	지원 계획	청년들의 역량들을 배양하기 위한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무 등	20
근로조건 등 복지혜택 (20)	근로조건	급여, 제수당,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	10
	복지혜택	청년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복지 혜택	10
합 계			100

7

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분

[부정수급의 주요유형]

- 지원금(보조금)의 목적외 사용(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)
-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
 - 참여제한 자를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
 - 참여근로자 고용관련서류의 허위작성
 - 참여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관련서류 허위작성
- 참여근로자 타(지역) 사업장 근무

[부정수급 처분]

-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모든 일자리 관련사업 참여제한
-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재 조치 등

8

기타

- 자세한 사항 및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2022년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」 운영지침에 따름

9

제출서류 및 접수처

제출서류

① 참가신청서(신청기업정보 포함)	1부	붙임 1	필수
①-1, 참가기업(단체) 소개서 * 협회 등 단체에 해당	1부	붙임 2	필수 (해당시)
①-2 참여 기업 확인서	1부	붙임 3	필수
①-3,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	1부	붙임 4	필수
② 사업자등록증(사본)	1부		필수
③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(사본)	1부		필수
④ 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 (유효기간 확인 必)	각 1부		필수
⑤ 4대 보험 완납증명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(공고일 기준 30일 이내 유효)	각 1부		필수
⑥ 기업 소개 자료(필요시)	1부	필요시	

* ② , ③ 번 서류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에 등록된 기업은 제출 불필요

□ 제출기간 및 방법

- 제출기간 : 2022. 2. 22.(화) ~ 2022. 3. 3.(목) 18:00
- 제출방법 : 온라인 제출 (방문 및 e-mail 접수 불가)
 - 양식교부 : 제주산업정보서비스 홈페이지(jeis.or.kr)에서 양식 다운로드
- 접수처: 제주산업정보서비스(jeis.or.kr)에서 신청
 - * 참가신청서에 반드시 대표이사 직인 후 신청서 업로드
 - *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
 - * 단) 전산오류, 파일용량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오프라인 접수 가능
 - ※ 오프라인 접수인 경우 관리기관(TP)의 전산상의 오류일 경우에만 인정
 - ※ 기업 사전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접수 불가

□ 사업관련 문의

기관명	부서명	담당자	연락처
(재)제주테크노파크	지역산업육성실	방다현 연구원	Tel. 064)720-3068
		양승현 연구원	Tel. 064)720-2873
		최고다 책임연구원	Tel. 064)720-2312

□ 제주산업정보서비스 관련 문의

기관명	부서명	담당자	연락처
(재)제주테크노파크	기업지원단	김경태 연구원	Tel. 064)720-3077